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,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며,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(법률 19125호, 2022.12.27., 일부개정)이 공포됨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를 신설하고, 한국환경공단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두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자의 장치 및 부품 반납 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의 제목 “(저공해자동차의 종류)”를 “(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 건설기계의 종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

1. 전기건설기계: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
2. 수소전기건설기계: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

제3조부터 제6조까지, 제6조의2,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1조제3항 중 “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거쳐”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“제1조의2제1호”를 “제1조의2제1항제1호”로, “한정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”로 하고, 같은 항

제8호의3 중 “전기자동차에”를 “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에”로,
““전기자동차”를 “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의6 중 “전기
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의7 중 “전기자동차
성능”을 “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 성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사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및
납부금액 수납
2. 법 제5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
재사용, 재활용 및 매각

별표 10의2 제1호라목에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
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,
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
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: 가목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
고,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
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저공해자동차의 종류) (생 략) <신 설>	제1조의2(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 건설기계의 종류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 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1. 전기건설기계: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 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 용하는 건설기계 2. 수소전기건설기계: 건설기계 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 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 용하는 건설기계 <삭 제>
제3조(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 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)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	

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
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
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
2.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
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
력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
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
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
시·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
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
하여 관계 전문가, 지역 주민 등
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1.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
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
진 실적과 그 평가
2.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
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
소관별 추진 대책

제4조(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
책위원회의 위원 등) ① 법 제1
4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

<삭 제>

무원”이란 기획재정부, 교육부, 외교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국무조정실, 식품의약품안전처, 기상청, 농촌진흥청,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.

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”란 산림 분야, 대기환경 분야, 기상 분야, 예방의학 분야, 보건 분야, 화학사고 분야, 해양 분야,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밝히는 경우

제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장거
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
는 연 1회 개최한다. 다만, 위원
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
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
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
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
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<삭 제>

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
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
며,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
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
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법
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
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(이하
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
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장은 장거리이동대
기오염물질대책 관련 환경부 소
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
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
사람이 되며, 실무위원은 다음
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, 교육부, 외교부,
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
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
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
부, 국무조정실, 식품의약품안
전처, 기상청, 농촌진흥청, 산
림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
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

<삭 제>

명

2.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

3.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
제6조의2(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) ①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
<삭 제>
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밝히는 경우

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
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
다.

제7조(실무위원회의 운영 등) ①
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
최한다. 다만, 실무위원장이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
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제7조의2(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
질연구단의 구성) ① 법 제14조
제5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
오염물질연구단(이하 “장거리
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”이라
한다)은 단장(이하 “연구단장”

<삭 제>

<삭 제>

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25명
이내의 연구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연구단장은 장거리이동대기
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
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
고,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
구단의 연구단원(이하 “연구단
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
사람이 된다.

1.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
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추천하
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
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전문가
1명

2.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
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단장
이 위촉하는 사람

제8조(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
견 청취 등) 위원장, 실무위원장
및 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
분에 따라 관계 기관의 공무원
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
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1.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: 위원

<삭 제>

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

2. 연구단장: 연구단장이 조사·연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, 연구단원이 요청한 경우

제9조(수당 및 여비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경우

2. 연구단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에 참석한 경우

제10조(운영 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61조(재정지원의 대상·절차 및 방법) 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66조(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1. ~ 8. (생략)

8의2.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(제1조의 2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)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

8의3.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전기자동차 충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

제61조(재정지원의 대상·절차 및 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거쳐 -----

----.

제66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8의2. -----
-----제1조의 2제1항 제1호-----

-- 한정한다)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-----

8의3. -----
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에 ----- “전기자동차등” -----

8의4. · 8의5. (생략) 8의6.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<u>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</u> · 운영 8의7.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<u>전기자동차 성능 평가</u> 8의8. ~ 10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8의4. · 8의5. (현행과 같음) 8의6. ----- <u>전기자동차등</u> ----- ----- 8의7. ----- <u>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</u> <u>계 성능</u> ----- 8의8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</u> <u>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</u> <u>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동차환경</u> <u>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1. <u>법 제58조제5항 및 제6항에</u> <u>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</u> <u>접수 및 납부금액 수납</u> 2. <u>법 제58조제7항 및 제8항에</u> <u>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 저감</u> <u>장치 등의 재사용, 재활용 및</u> <u>매각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879